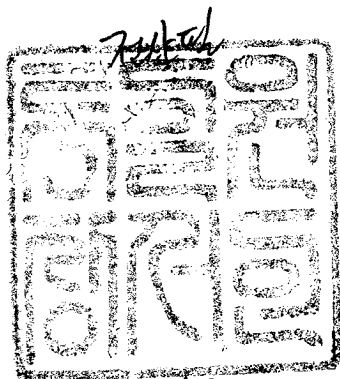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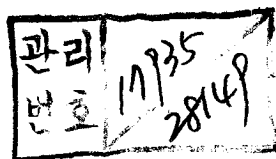


分斷國 統合過程

張 錫 澱(統一研修院 教授, 行博)



統 一 研 修 院



차 례

第1章 序 論	3
第2章 베트남의 統合過程	6
第1節 分斷過程	6
第2節 統合過程	9
第3節 敗亡原因과 敎訓	21
第3章 예멘의 統合過程	26
第1節 分斷過程	26
第2節 統合過程	28
第3節 統合의 敎訓	40
第4章 東西獨의 統合過程	44
第1節 東方政策과 基本條約	44
第2節 交流協力の 過程	56
第3節 統合推進經緯	69
第4節 統合의 敎訓	87
第5章 結 論	90

第1章 序 論

우리는 지금 분단시대에 살고 있다.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最高價値와 至上課題가 있다면 그것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 실현일 것이다. 통일실현을 지상과제로 삼는 우리에게 다른 분단국가의 통일실현은 많은 의미에서 교훈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가는 여러 형태로 생겨났다.

한국과 독일처럼 그 나라 국민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대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강제분단된 「國際型 分斷國」이 있고, 중국과 베트남처럼 그 나라의 내부사정에 의해 혁명이나 내전에 의해 분단된 「國內型 分斷國」이 있다.

그리고 외국의 식민지에서 일부분씩 독립하면서 스스로 분열된 예멘같은 분단국이 있다.

그 밖에도 오스트리아, 라오스와 캄푸치아, 몽골, 인도와 파키스탄,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의 분단국도 있다.

이와같은 분단국들은 그 나라마다 분단 될 수 밖에 없

있던, 그 시대 특수한 사정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分類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분단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분단은, 분단 그 자체가 민족적 불행이었고, 그로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어야 했으며 지금까지 40여 년간 오고 가지도 못하는 이산가족들의 아픔 등, 민족의 고통은 다른 분단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분단국 중, 제일먼저 베트남이 불행히도 1975년 4월 30일 적화통일되었다.

그 후,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입을 모아 사상과 제도가 다른 「이데올로기의 상극적 대치상태」에 있는 분단국의 통일은 “어느 한 쪽이 어느 한 쪽을 먹어치우는 전쟁 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즉 평화통일은 막연한 희망일 뿐, 실현불가능한 「환상적 통일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고, 역사는 그러한 주장을 반증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이 돌연히 평화통일을 선포했다. 그리고 10월 3일 동서독이 평화통일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제 「평화통일론」은 실현불가능한 환상과 탁상공론이

아니라, 가장 理想的인 최상의 통일방법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입증한 것이 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통일을 실현할 차례이다. 바야흐로 「통합의 시대」, 「통일의 연대」를 맞이하여 우리 통일실현의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민족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기필코 민족사의 소명이며 지상과제인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우리는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민주화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분단 이후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統一論議의 「百家爭鳴時代」를 맞고 있다.

정부는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함으로써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진력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民族共同體意識을 바탕으로 둔 민족내부의 내적 통일여건조성과 더불어 한반도 주변정세의 긍정적인 변화에 따른 외적 통일환경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우리는 통일실현을 가능케 하는 내외의 통일환경조성에 있어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다른 분단국들의 통일실현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他山之石의 敎訓을 찾아야 한다.

일찍이 孔子는 “三人行하면 必有我師”라 하였다. 즉 “세 사람이 동행하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느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적화통일의 비극으로 패망해 버린 베트남의 패망원인을 규명해 봄으로써 우리의 국가안보상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음으로 예멘과 독일의 통일실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대화와 협상, 평화통일실현의 敎訓을 도출하고자 한다.

第2章 베트남의 統合過程

第1節 分斷過程

베트남은 한반도나 독일과 달리 제2차세계대전 후, 프랑스의 식민지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에서 야기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국가간의 國際會議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베트남은 19세기 이래, 약 80년간 프랑스의 식민지이었다.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인 1940년에 일본군이 진주하여 다시 5년간을 식민통치를 하였다.

그 후, 1945년 日本軍의 항복으로 영국과 중국이 베트남을 남북으로 점령하였는 데, 프랑스는 먼저 영국과, 뒤이어 중국과 협정을 맺음으로써 남북베트남을 되 찾았다.

1945년 8월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을 植民統治하게 되자 1946년 12월 29일 베트남군이 하노이에서 프랑스군을 공격하게 된 것이 「印支戰」의 도화선이 되었다.

1955년 7월 21일 「제네바회담」에서 印支駐在 프랑스군사령관과 하노이의 베트밍사령관 사이에 「休戰協定」이 체결됨으로써 베트밍군은 17도 이북으로, 프랑스군은 17도 이남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것이 직접적인 분단의 계기가 되었다. 「제네바회담」의 「休戰協定」에 따라 1956년 7월에 남북베트남의 自由總選舉를 실시 할 예정이었으나, 북베트남은 이미 1954년 10월 11일 부터 강력한 統治權을 확립하여 共產化過程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남북베트남의 자유총선거의 실시는 실현되지 못하고, 드디어 북베트남은 호지명이 이끄는 共產政權이 수립되게 되었다.

한편 남베트남은 1955년 10월 독자적으로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憲法을 제정·선포하였다. 그리고 총선거를 실시

하여, 고·딘·디엠을 大統領에 선출시킴으로써 남베트남 政府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의 協商에 따라 남베트남에서 프랑스군이 완전 철수하고, 이 지역에서 미군이 남베트남 지원을 맡게 되었다.

그 후, 미국은 1955년 「東南亞條約機構」의 창설과 더불어 남베트남정권에 군사지원 및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개시하였다.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남베트남의 內政改革과 援助增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남베트남의 고·딘·디엠 정권은 1963년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붕괴되고 말았다.

남베트남의 정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북베트남의 무력 공세가 가열되게 되었고, 드디어 1964년 「통킹만사건」이 발생하자 북베트남은 본격적으로 미군을 직접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1965년 본격적인 北爆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국은 단계적으로 戰線을 확대 해 나가면서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休戰協商에 응해 오도록 정치적·외교적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북베트남은 이와같은 미국의 압력에 냉담하면서 도리어 협상이 先行條件으로 美軍撤收, 北爆中止를 강력히 내 세웠다.

결국 북베트남의 강경태도에 부딪친 미국은 戰爭의 포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第2節 統合過程

1. 베트남전쟁

북베트남의 대남베트남 침투는 1956년 부터 본격화했다.

남베트남 정부의 수립과 미국의 防衛公約에 따라 胡志明은 전략을 수정하여, 군사공세로 부터 남베트남 내부에서 테러행위와 게릴라전법을 위주로 하는 전법으로 바꾸었다.

1958년 남베트남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테러행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즉, 7월에는 비엔호아의 미군기지를 기습하여 미군사고문단원 2명이 피살됨으로써 첫 희생자를 기록했다.

1960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케네디 대통령은 존슨 부통령과 맥스웰·테일러 장군을 남베트남에

파견하여 현지정세를 검토케 했으며, 남베트남에 대한 經濟援助와 군사고문단의 증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때는 美軍 地上戰鬥部隊는 직접 베트남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베트남군과 주민들을 격리시키려는 이른바 「戰略村 作戰」을 추진하여 초기에는 다소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남베트남내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점차 守勢에 물리게 되었다.

1963년 1월 남베트남군은 「압박 전투」에서 패배했고, 남베트남정부에 대한 불교도와 학생들의 반정부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¹⁾이 발생하자 미국은 지상군부대가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일단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베트남에 파견되는 미군의 숫자는 급증했다.

처음에는 미군이 공산군과의 접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나 전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남베트남군은 베트남

1) 「통킹만 사건」이란, 통킹만에 정박중이던 미국 첩보선 메독스호와 터너·조이호가 1964년 8월 2일과 4일, 북베트남 초계함의 습격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미국은 북베트남 해군시설에 폭격명령을 내리는 한편 “동남아에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통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통킹만 결의문」을 채택했다.

과의 집전에서 번번히 패퇴했다.

2. 「민족해방전선(Veit-Cong)」의 출범

남베트남 정부수립 4년째인 1959년에 민중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농촌지역에서 반정부 활동이 전개되면서 점차 반란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농촌폭동은 초기의 산발적인 요인 암살과 테러에서 조직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남베트남 정부는 이 들에 대한 말살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 들 반정부 세력은 건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나갔다.

미국은 사이공에 「베트남군사원조사령부(MACV)」를 설치하고 미국인 공작요원 9,865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남베트남정부와 미국은 「平定計劃」에 착수하여 농민을 강제로 집단수용하는 「戰略村」을 설치했다(약 8,679촌).

남베트남의 수 많은 농민들은 조상 전래의 집에서 쫓겨나 포로수용소와 같은 「강제집단수용소」에 이주시킴으로서 농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戰略村」은 농민과 반정부세력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이러한 혼란중에 元老 佛教僧들의 분신자살과 불교도의

非暴力 反政府鬭爭은 결국 고·딘·디엠 정권의 몰락을 초래했다.

당시 비폭력 불교도 집회에서 군대에 의한 살상은 UN 총회의 의제로 상정될만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정식으로 결성된 것은 1960년 12월이었다. 베트콩은 남베트남에 있어서 정치·군사투쟁에 일체의 책임을 지는 조직체제를 갖추었다.

1960년 12월 20일 적극적인 반정부저항운동을 중심으로 남북통일과 평화·중립·독립을 지지하는 재야세력들이 규합하여 「남베트남해방전선」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10개항의 강령을 선포했다.

① 고·딘·디엠 정권의 타도, 민족·민주연합정부의 수립

②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

③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의 건설

④ 소작료 경감과 점진적 토지개혁

⑤ 민족문화의 건설

⑥ 인민의 군대 건설

⑦ 남녀동등권·민족평등·재베트남 외국인과 해외 체류 베트남인의 권리보장

- ⑧ 평화적 · 중립적 외교정책
- ⑨ 남북베트남의 관계정상화와 평화통일
- ⑩ 세계평화 옹호

한편, 북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을 남베트남으로 복귀시켜 베트콩과 합세토록 했다.²⁾

1961년 남베트남군 23만명 중, 장병들의 도망자, 탈영자가 속출했고, 이들은 대부분 베트콩에 합류했다.³⁾

베트콩의 주도세력은 농민 · 노동자 · 학생 · 청년 · 부인 등 방대한 조직을 가진 세력들의 규합체였다.

베트콩의 정치적 기반은 광범위 했고, 그 조직은 각계 각층을 망라했다. 「인민혁명당」에서도 서기장 보 · 찌 · 쯔을 파견했고, 「민주당」, 「급진사회당」등 좌익정당에서도 서기장 우엔 · 반 · 찌에우와 흰 · 탄 · 후엣을 파견했다. 그 외에도 기독교에서 이리 · 알레오, 불교계에서 수명의 대표, 소수민족인 「라테族」도 대표를 파견하였다.

베트콩 의장은 우엔 · 후 · 토라는 변호사로 옥중 당선되었다.

2) 1963. 3. 25. 북베트남 군기관지 「관도이 난잔지」참조

3) 李泳禧, 「베트남전쟁」, 두레신서, 1985. P. 58(“1964년에 2,300명 탈주”)

베트콩의 사회적 기반도 광범위했다. 수 많은 농민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점령지구를 「解放區」로 선포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 해 주고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 해 수확량을 증대시켜 농민들의 신뢰를 구축해 갔다.

베트콩은 도시에도 뿌리를 깊숙히 내리고 있었다. 「베트남해방노동조합연합」이라는 전투적 조직을 만들어 반미 투쟁의 파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1962년에는 49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베트콩은 학생운동권에도 침투했다. 그리하여 시위운동·합법운동과 비합법활동을 교묘하게 결합시킨 여러가지 반정부운동을 추진했다.

또한 베트콩은 정부의 공무원·군인 내부에도 상당수의 내통자를 배치했다. 그리하여 정책기밀 및 군사작전기밀을 미리 탐지하여 기민하게 처리했다.

이와같이 베트콩은 많은 인민의 지지를 받는 조직으로 성장해 갔다.

3. 베트남 평화협상

1965년 4월 북베트남은 이른바 「평화협상 4개항」을 내놓았다.

① 미국은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고 전쟁행위를 중지해

야 한다.

② 통일될 때까지 베트남에 외국군이 주둔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軍事同盟에도 가담해서는 안된다.

③ 베트남의 국내문제는 민족해방전선의 綱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④ 베트남의 통일은 외부의 간섭없이 베트남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협상조건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③ 항의 “민족해방전선의 강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남베트남 정부의 타도”라는 조건은 들어 줄 수 없는 것이어서 협상은 처음 부터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은 14개항으로 집약되었다.

① 1954년과 1962년의 「제네바협정」에 기초한다.

② 미국은 前提條件 없는 협상을 환영한다.

③ 미국은 無條件 대화를 환영한다.

④ 미국은 「동남아회의」의 개최를 환영한다.

⑤ 敵對行爲의 중지를 위한 예비회담의 개최를 환영한다.

⑥ 북베트남이 제의한 4개항의 토의를 환영한다.

⑦ 미국은 동남아에서의 軍事基地를 원치 않는다.

⑧ 미국은 베트남의 평화가 정착되면 미군을 철수시킨다.

⑨ 미국은 베트남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정부수립을 적극 지지한다.

⑩ 베트남의 통일은 베트남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⑪ 동남아국가들의 非同盟이나 中立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한다.

⑫ 미국은 동남아의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희망한다.

⑬ 베트콩은 북베트남의 침략행위가 중지되는 즉시 협상에 참여시킬 것이다.

⑭ 미국은 북폭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

이와같이 미국과 북베트남은 서로 평행선을 긋는 주장을 내 세워 조금도 양보없이 팽팽한 대결을 계속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북폭은 더욱 치열해 졌고, B-52機의 북폭이 정기적으로 감행되었다. 1966년 말에는 주월미군이 계속 증파되어 무려 40만명을 넘게되었다.

地上戰과 北爆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전쟁이 가열

되자 북베트남은 “무조건 북폭중지”,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침투중지를 보장하라”고 맞서는 입장으로 압축되는 상황에 놓였다.

1966년 말 미국은 새로운 제안을 내 놓았다. 즉 “미국이 무조건 북폭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과 북베트남은 「적당한 시기가 지난 후」서로 전쟁을 축소하기로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의 「적당한 시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論難이 일게 되었고, 미국은 「적당한 시기」는 “북폭이 중지된 후 6개월이 지나면 남베트남에서 미군과 북베트남군이 철수해야 된다”고 해명했다.

제2단계 협상은 1966년 11월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10개항으로 제안을 수정·정리하였다. 결국 “북베트남의 남베트남 침투중지를 보장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수정된 데 불과했고, 북베트남은 계속하여 “무조건 북폭중지”를 고집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1968년 3월 31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북폭을 부분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북베트남은 4월 3일 “미국의 폭격과 그 밖의 모든 전쟁행위를 무조건 종식시키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

록 미국측 대표와 자리를 같이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하여 1968년 5월 10일 「파리會談 豫備會議」가 열리게 되었다. 회담은 처음부터 복잡한 문제들로 얽혀들기 시작했다. 남베트남은 베트콩대표의 참석을 반대했고,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남베트남의 참석을 반대했다. 결국 4개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합의하고, 둥근 원탁에 둘러 앉으며 국가호칭이나 국기를 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1969년 1월 25일 파리회담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북폭중지를 둘러싸고 膠着狀態에 빠져 들었다.

한편 미국의 키신저는 파리회담이 계속되는 중에 닉슨 대통령의 親書를 비밀리에 胡志明에게 전달 했고, 곧 이어 胡志明의 회신이 왔다. 그리하여 8월 4일 파리에서 키신저와 북베트남의 수안·투이와의 비밀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 비밀회담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키신저와 북베트남측과의 두번째 비밀회담은 1969년 9월 胡志明의 死亡으로 연기되어 1970년 2월에 열리게 되었고,

레·독·토와 4차례에 걸친 비밀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새로운 提案으로 “미국과 북베트남간에 협정이 맺어진 이후, 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서 완전철수 할 것과 총선거가 실시되기 1개월 전에 티우정부가 辭任할 것”을 제의했다.

한편 키신저는 진전없는 협상의 전략을 바꾸어 소련과 중국을 통한 압력작전을 성공시켜 나갔다. 이 작전은 아주 주효했다.

드디어 1972년 7월 18일 베트남 평화협상은 끝을 맺었다.

결국 베트남 평화협상은 베트남의 共產化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은 국내여론에 몰려 처음에 내세웠던 조건들을 하나씩 둘씩 완화해 갈 수 밖에 없었고, 남베트남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키신저와 레·독·토가 파리에서 秘密協商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말았다.

4. 통합과정

파리협정의 공식명칭은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이며, 파리협정 조인 4당사자는 미국정부·베트남공화국정부·베트남인민공화국정부·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로서 1973년 6월 13일 조인하였다.

동협정 제 2 장의 「군사조항」에 “미국 및 그 동맹국군대는 전쟁행위중지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사·준군사 요원 및 무기·탄약을 남베트남에서 전면 철수·철거하며, 그 후에는 남베트남의 두 당사자⁴⁾가 현상(현지상태)에서 협정이 규정한 모든 군사적·정치적 해결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베트콩의 실체를 인정했고, 미군철수 후의 남베트남에 두개의 실체를 사실상 승인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북베트남이 1975년 3월 11일을 기해서 개시한 남베트남에 대한 「총공세작전」은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본래의 의도대로 추진되었다.

파리협정 후, 남북베트남 당사자로 구성된 「휴전감시기구」는 사실상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쌍방간에 전투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북베트남은 군사력의 補强期로 1년을 보낸 후, 1974년 12월 부터 본격적인 「남베트남총공세」에 돌입했다.

결국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됨으로써 공산화통일로 끝을 맺게 되었다.

4) 두당사자(남베트남 정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第3節 敗亡原因과 敎訓

1. 패망원인

남베트남의 참모총장으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던 카오·반·비엔장군은 패망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① 매우 불리한 파리협정을 남베트남정부가 수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② 미국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한 국가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③ 미국의 갑작스런 軍援의 대폭적인 삭감은 남베트남 국민과 군대의 사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④ 티우 대통령의 중대결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제2군의 철수가 급히 행해져 작전상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⑤ 미국이 국가적 공약을 위반하고 공산주의자들과 화해하기로 한 정책변화를 남베트남 정부는 깨닫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패망원인을 분석하면서 남베트남 정부의 잘못도 지적하는 반면, 미국의 배신에 패망원인의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남베트남의 패망과 적화통일의 베트남통

함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베트남의 적화통일은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① 베트남인들은 외세에 대하여 끈질긴 저항의식을 지녀왔다는 점이다.

베트남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외세에 끈질긴 저항의식을 지니며 살아왔다. 그러한 역사의식은 중국이든, 프랑스·영국이든, 일본·미국이든 상관없이, 1천년의 지배였든, 1백년의 지배였든, 8년의 지배였든 관계없이 나타냈다. 이러한 저항운동은 민족주의운동으로 발전하여 남베트남정부와 미국을 그러한 저항의 대상으로 몰아갔다.

② 농민들의 支持가 정세변화의 勝敗를 좌우해 왔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의 역사에 나타난 격변기의 특징은 농민들의 지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算術的으로 敵의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마음만 정해지면 승리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는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북베트남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

며, 베트콩은 이 사실에 행동강령을 맞춤으로써 끝까지 버티어 낼 근거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③ 外國軍은 성공적인 결과를 남기고 돌아간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內戰狀況下에서 일방이 타방을 공격하기 위하여 外國軍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라도 끝내 승리한 경우가 없었다. 泰國軍이고 中國軍·프랑스軍이 그랬고, 또 日本軍도 그랬다.

베트남을 프랑스 植民支配의 延長線上에 두고 미국을 프랑스의 代置勢力으로 몰아갔던 북베트남의 전략은 그들의 역사적·문화적 인식과 상통하는 것이었다.

둘째, 정신적 전력이 물리적 전력보다 더 강한 힘을 보여 주었다.

미군의 최첨단 무기와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도 무력이나 기술이 훨씬 낮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전쟁에 있어서 정신적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입증해 보인 것이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교묘한 방법으로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物量政策을 逆으로 이용하면서 그들의 精神戰力を 키워갔다.

셋째, 베트남전쟁은 이데올로기의 兩分法的 戰爭觀에 중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의 參戰目的은 공산세력을 막는 데 있었다.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도 반공을 國是로 삼았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自國의 이익 때문에 승산없는 전쟁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철수하여 베트남 赤化統一의 길을 터 주고 말았다.

또한 같은 시기에 라오스와 캄푸치아가 共產化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태는 베트남전쟁을 이데올로기전쟁이라고 보기 보다는 國益爲主의 實利戰爭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2.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을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찾아야 하는가?

① 국가안보는 自主國防에 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생존과 統一繁榮의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強者存」의 철칙과 같이 강력한 자주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

② 남베트남에서 정국불안이 계속되고, 전쟁중의 혼란속에서도 그치지 않고 일어났던 군사쿠데타는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패망을 자초했다는 사실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군사쿠데타에 의한 초대 대통령 고·딘·디엠 형제의 살해로 시작되어 수 없이 반복된 정권의 교체는 부침하는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실추시켰고, 정권쟁탈에 혈안이 된 일부 물지각한 군부의 쿠데타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정치적 안정과 정통성이 유지되는 강력한 정부, 그리고 국민화합에 의한 國力伸張이 첨경임을 깨달아야 한다.

③ 남베트남에서 自生한 容共勢力인 베트콩을 발본색원하지 못한 것이 패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교훈으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창설된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라 불리는 베트콩 세력은 「해방농민협회」, 「해방노동자협회」, 「불교·카톨릭단체」등 20여개의 在野團體로 결성되었다. 이 베트콩 세력은 북베트남에서 밀파된 工作要員이 아니라 남베트남에서 자생한 左傾容共勢力이었다. 그 세력이 점차 전국 각지의 농촌까지 파급되어 급기야 남베트남군은 결국 베트콩에게 항복하게 된 것이다.

④ 북베트남의 적화통일 전략전술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전술과 유사하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1960년 9월 북베트남노동당 제 3 차 대회에서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수행, 남베트남해방의 성취”라고 했듯이 “朝鮮革命의 전국적 승리”라는 목표아래 “적화통일을 위하여 김일성은 북한을 사회주의의 낙원으로 건설하여 혁명의 參謀部로 하고, 남한지역의 혁명을 통한 共產化統一을 실현하겠다”는 전략과 전술이 유사한 것이다.

또한 統一戰略과 戰術的 운용면에서도 북베트남이 前衛部隊나 戰線組織을 그 자체로서 革命力量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革命基地로서 자기들이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장용으로 활용하였듯이 북한도 그러한 戰略戰術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第 3 章 예멘의 統合過程

第 1 節 分斷過程

1. 남예멘의 독립

남예멘은 1839년부터 1967년까지 영국의 植民地였다.

남예멘은 영국함대가 수도 「아덴」을 점령함으로써 오스만터키의 지배로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바뀌게 되었고, 1967년 독립을 쟁취할 때 까지 무려 128년간 영국의 식민지 통치아래 지배를 받아왔다.

남예멘의 독립은 영국의 自意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예멘의 군사적 압력과 남예멘에서의 치열한 反英테러와 폭동, UN총회의결(1963. 12)등의 국내외적 압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1967년 「예멘人民共和國(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정부를 수립했다.

예멘의 정권수립은 강온파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온건파인 「民族解放戰線(NLF)」이 승리하여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수립하고, 사아비 서기장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0년 남예멘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새 憲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2. 북예멘의 독립

예멘의 분단은 1517년 오스만터키에 점령되어 그 지배를 받게 된 데에서 그 淵源을 찾을 수 있다. 예멘은 異民族의 植民統治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분단되었기 때문이다.

오스만 터키의 支配權에 들어간 예멘은 현지에 토후세

력들이 할거한 상태에서도 이슬람교에 의한 민족의 일체성을 유지해 왔다.

제 1 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오스만터키가 붕괴되자 남예멘 지역을 제외한 북예멘이 독립하게 되었다.

1918년 「예멘아랍공화국(Yemen Arab Republic)」을 수립했다.

북예멘은 대외적으로는 非同盟中立路線을 추구하며 대내적으로는 이슬람교의 원리를 國家理念으로 한 立憲共和制 國家였다.

第2節 統合過程

남북예멘은 분단 이후, 여러차례의 국경분쟁과 충돌이 있었다.

남예멘은 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자마자 체제의 상대적 先進性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북예멘내에 있는 左傾急進勢力을 부추겨 赤化統一을 이룩하려 했다.

반면에 북예멘은 이슬람교의 戒律을 기반으로 한 統一을 도모하여 남예멘과는 근본적인 統一政策의 차이를 보였다.

결국 남북예멘은 통일의 주도권 다툼이 가열해 갔고, 통일정책노선의 차이, 이해대립의 골이 깊어가면서 잦은 국경분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갔다. 그 때마다 남북예멘의 당사자들은 자주 대화를 갖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했다.⁵⁾

1. 트리폴리 정상회담

1972년 11월 28일 북예멘의 아이니 首相과 남예멘의 하사니首相이 트리폴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9월의 남북예멘 국경충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남북예멘의 통합을 위한 중대한 회담이었다.

이 회담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호는 「예멘공화국」으로 한다.
- ② 수도는 북예멘의 사나로 한다.
- ③ 국가이념은 共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로 한다.
- ④ 정치체제는 單一大統領制, 통합된 의회와 행정부 및 사법부로 구성한다.
- ⑤ 기간은 1년 이내에 통합한다.

이러한 합의에 이른 배경은 남북예멘은 다 같이 長期戰

5) 1972. 9. 26. 국경충돌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10월 28일, 「카이로 회담」
1973. 5. 카타바지역 국경충돌의 해결을 위한 「사나정상회담」등.

을 치를 국력이 모자랐고, 양국의 國內政情이 불안했으며, 아울러 아랍연맹국들의 和解壓力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국가의 國家理念이 共和主義, 民族主義로 됨에 따라 북예멘에서는 王政派 및 土侯勢力들의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 아이니首相이 해임되고, 하자리首相이 執權하는 변화가 있었다. 한편 통합의 기대속에 새 정치조직인 「예멘연합(Yemen Union)」이 結成되는 등, 統合熱氣가 고조되었으나 남북예멘간에 統合會議만 계속되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2. 쿠웨이트 정상회담

1979년 3월 30일 북예멘의 살레大統領과 남예멘의 이스마일大統領이 쿠웨이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⁶⁾

이 정상회담은 1979년 2월 남예멘 政府軍이 북예멘의 반정부단체인 「民族民主戰線」과 합세하여 북예멘의 國境都市

6) 북예멘은 1974. 6. 무혈쿠데타가 일어나 Ibrahim Al-Hamdi 대령이 집권하였으나, 1977년 被殺되었다. 그 후 Ahmad Al-Ghashimi 중령이 집권하였으나 1978. 6. 시한폭탄의 폭발로 死亡하였고, Saleh中領이 大統領에 被選되었다. 한편 남예멘은 1978. 6. 유혈쿠데타가 발생하여 Rubayi-Ali 대통령이 被殺되었고, 1978. 10. Abdul Fattah Ismail이 大統領에 選출되었다.

를 공격함으로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긴장시켰고 아랍연맹이 개입하여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국가 憲法起草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위한 기초작업을 4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② 위 기초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양국 수뇌가 회담을 갖고, 동 초안을 승인한다.

③ 憲法草案의 찬반을 묻는 國民投票 및 統一立法府의 설치를 위한 「閣僚委員會」를 설치한다.

④ 양국 수뇌는 쌍방의 수도에서 매월 회의를 소집하여 「憲法起草委員會」의 작업상황과 기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검토한다.

이러한 統合合意의 背景은 북예멘의 경우, 共和派와 王政派의 세력간 갈등이 심화되고, 잇달은 쿠데타, 暗殺事件이 발생하였고, 남예멘의 支援을 받은 反政府團體인 「民族民主戰線」의 게릴라작전, 파괴활동이 빈번한 政局不安이 가중됨에 따라 統合合意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한편 남예멘의 경우, 이스마일大統領이 執權以後 親蘇政策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예멘의 政局不安을 틈타서 統合推進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쉽게 合意에 도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合意以後에 양국은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아덴 정상회담

1981년 12월 9일 북예멘의 살레大統領과 남예멘의 무하마드大統領이 아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⁷⁾

이 회담에서는 양국 정상간에 「남북예멘 協力 및 調整에 관한 協定」이 締結되었다. 그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兩政府의 조정에 관한 문제

양국은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예멘評議會」를 구성하고, 이 회의의 指示事項을 실천할 「兩國連席閣僚會議」와 동회의를 운영할 「秘書局」을 설치한다.

「예멘評議會」는 6개월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連席閣僚會議」는 3개월에 한번씩 개최한다.

② 經濟問題

兩國의 經濟 및 社會開發計劃을 조정하고 「兩國聯合公

7) 남예멘은 1980. 4. 23. 무하마드大統領이 執權하였다. 1980. 5. 과 1981. 8. 「民族民主戰線」과 북예멘의 전투가 치열해 지자 남예멘은 리비아와 이디오피아등과 「3國友好條約」을 締結하였다. 1981. 9. 15. 「사나 頂上會談」, 1981. 5. 「아덴정상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社」에 의한 地質 및 수자원 분야의 공동조사와 개발에 힘쓴다.

그리고 양국의 농업지도기구와 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한다. 그 외에 연결도로 및 공동회합장소 등을 설치한다.

③ 교육·文化情報에 관한 문제

국경에 공동학교를 설치하고, 남북예멘 학생들의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다. 그리고 「文化·情報委員會」를 설치하고, 사회교육에 관한 교과내용을 마련하여 교육과목을 통일한다. 또한 라디오·TV의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여 동시 방영한다.

④ 상호왕래에 관한 문제

양국의 국민들에게 서로 왕래할 권리를 부여한다.

⑤ 외교정책에 관한 문제

帝國主義와 시온主義를 반대하며 아랍권(특히 팔레스타인운동)에 대한 행동을 통일한다. 그리고 외국군의 군사기지 설치를 반대하고 외국군의 주둔을 배척한다. 또한 내부분쟁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치적·군사적 블럭 및 협정에 반대하며 非同盟運動을 支持한다.

이와같은 합의에 도달하게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당시 북예멘은 소련 및 左傾아랍諸國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입장이었고, 남예멘은 만성적인 貿易赤字를 補填하고 지속적인 經濟開發을 추진하기 위하여 保守아랍의 경제원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불필요한 양국간의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순조롭게 합의에 이른 것으로 評價된다.

4. 「양국 통합헌법초안」합의

1982년 1월 9일 남예멘 압둘라·가님議長(남예멘最高人民評議會幹部會議)은 “양국은 「統一예멘共和國」으로 통합키 위한 憲法草案에 합의했으며, 동 초안이 批准을 얻기 위하여 양국정부 및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統合憲法草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국호：統一예멘共和國
- ② 수도：북예멘의 현재 수도인 사나
- ③ 국교：이슬람교
- ④ 입법부：양국국민들이 선출하는 議員들로 구성
- ⑤ 행정부：「統合閣僚評議會」구성

이 「통합헌법초안」의 내용은 1972년 11월에 합의한 통합

원칙 내용 중 國家理念인 共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의 규정이 삭제되고, 國教를 이슬람교로 규정했다. 이는 그동안 남예멘의 적화통일 야욕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국교인 이슬람교로 계속하여 견제하여 온 북예멘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서 급격한 共和體制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북예멘의 정치적 현실과 아랍保守國家들로 부터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남예멘의 경제적 현실이 타협되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통합헌법초안」은 남예멘측의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고, 북예멘측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批准도 되지 않았다.

양국간에 근본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政治理念의 조정이 어렵고, 양국은 미국, 소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들 배후세력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통합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1982년 5월 「타이즈정상회담」을 개최하고 「兩國統一問題에 관한 합의」를 했고, 1983년 5월 양국간에 「내무성통합」에 합의했다. 그리고 1983년 8월에 양국은 「統合最高委員會」를 설립하고 「統合憲法草案」의 審議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합헌법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1989년 10월 31일 부터 11월 2일 까지 「남북예멘
閣僚會議」를 개최하여 다시 「統合憲法案」을 최종적으로 심
의하여 작성했다. 그리고 동년 11월 30일 「아덴정상회담」
을 개최하여 합의된 統合憲法案을 6개월내에 양국의회
批准을 받고, 비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國民投票로
확정짓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0년 1월과 3
월에 두차례의 「남북예멘閣僚會議」를 개최하여 정부부처의
증설, 정치범 석방,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법안 등 46개의
法案을 승인했다.

그리고 동년 3월 19일 양국정상에 의한 최종합의를 거
쳐 5월에 양국의회에 상정했다.

5. 남북예멘의 통합실현

1990년 5월 22일 남북예멘은 남예멘의 수도 아덴에서 통
일을 선포했다.

현재 통일예멘은 30개월 동안 존속기로 합의한 「過渡中
央政府」가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미 國家組織改編을 끝내고, 경
제·사회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도정부는 모든 면

에서 급격한 통합은 될 수있는 대로 억제하면서 서서히 신중하게 대처해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완전한 통합에 이르면, 多黨制에 의한 總選實施로 완전통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편 「과도중앙정부」의 구성은 人口比例의 원칙을 적용하여 남북예멘에서 要職을 分配하였다. 즉 950만의 인구를 가진 북예멘이 비록 영토는 넓지만 인구가 250만 밖에 안되는 남예멘 보다 많은 요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남예멘에 대하여도 충분한 배려를 했다. 즉, 북예멘에서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반면 부통령과 총리는 남예멘이 차지했다.

또한 국무원의 각 부처에서 장관이 북예멘 출신이라면, 차관을 남예멘의 인사가 차지함으로써 균형있게 안배했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수를 증설하여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이 통일로 인하여 자리를 잃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였다.

1990년 5월 25일 발표된 통일예멘의 국가조직은 통일헌

법에 의하여 대통령평의회 · 의회 · 국무원으로 분립되었다.

첫째, 「국가최고지도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평의회」는 5인으로 구성되고(북예멘3인, 남예멘2인),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평의회의장은 국방위원회를 주재하도록 되었는데, 현재는 과거 북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압둘 · 살레대통령이 맡고 있다.(부통령은 남예멘의 대통령이었던 알 · 비드가 맡고있다.)

둘째, 의회는 국무원에 대한 認准權과 不信任權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과도기간 중 북예멘에서 159명, 남예멘에서 111명, 기타 민족대표(部族) 31명, 총계 301명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국무원은 총내각이 39명으로 구성되었다.(북예멘 20인, 남예멘19인)

통일예멘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며, 이슬람교의 戒律(샤리아)은 신성한 律法으로서 존중되고 국가운영과 활동의 지도적 指針으로 삼는다. 즉, 헌법 제 3 조에 “이슬람율법이 모든 입법의 主根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일헌법에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이념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경제제도는 混合經濟體制로 하여 생산시설의 국공유화

와 아울러 개인사유도 허용하기로 명문화하였다.

그 밖에 經濟改革措置로서 外資導入推進法・所得稅免除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貨幣는 과도기간 중에는 북예멘의 「리알」과 남예멘의 「디날」을 混用하기로 하였다. 다만 환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남예멘의 「디날」을 24% 評價切下하였다.⁸⁾

이상에서 남북예멘의 통합과정을 살펴 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과 우여곡절을 넘고 또 넘어서 남북예멘은 드디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 하며, 그들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해야 한다.

공산권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1989년은 남북예멘에 있어서도 「통일의 해」로 기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예멘의 정상들이 상호방문과 회담을 통해 「通行自由化協定」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즉, 1989년 11월 30일 북예멘의 살레대통령이 남예멘의 수도 아덴을 방문하여 구축된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통행자유화협정」이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

8) 1디날의 通貨價值는 20리알 수준이나, 사용 거래시에는 1디날은 26리알의 환율을 적용키로 하였다.

에 「統一宣布式」을 갖는데 합의했던 것이다.

그 후, 1990년 3월까지 두 차례의 兩國 閣僚會議에서 統一憲法案은 물론 세금·은행·여권·재외공관 등에 관한 46개 法案을 합의하게 되었다.

예멘이 통일된 후, 남예멘의 많은 주민들이 살기좋은 북예멘으로 이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구나 의회의 기구가 두 배로 늘어나 남예멘의 정치인·관리들이 수도인 사나로 몰려들고 있다.

第3節 統合의 敎訓

우리는 예멘의 통일에서 우리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혜로 원용할 수 있는 방식과 교훈을 도출할 필요성을 갖는다.

여러차례의 국경분쟁과 무력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이념·제도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양국 정부당국간의 대화와 협상, 순리적 합의에 의하여 마침내 평화통일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예멘의 통일을 성취시킨 요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예멘은 지도자의 암살과 쿠데타 등, 양국의 국내정치가 다 같이 불안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지도자들의 계속된 대화와 통일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던 남예멘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예멘은 더 이상 개방과 화해로 나아가는 국제정세를 외면하고, 낙후된 경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해주던 소련이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9년 사회주의 법률들을 폐기했고, 정치적으로 多黨制를 허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행제한을 폐지하고 국경을 개방하여 북예멘과 「通行自由化協定」을 체결하게 되었다.

셋째, 통일에 형식상 1 : 1 혹은 인구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남예멘이 공산체제를 버리고 북예멘의 민주이념과 체제를 따랐다는 점이다.

넷째, 예멘의 통일은 같은 민족이라는 「民族共同體」에 기초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교라는 정신적·문화적·사회적 공통분모가 내재되어 강한 민족주의

성향, 단일민족성에 대한 민족공동체의식이 통일열기로 확산되어 갔다.

다섯째, 순조로운 통합을 위해 북예멘은 남예멘의 처지를 충분히 배려했다는 점이다.

예멘의 통일을 주도해 온 북예멘의 압둘·살레는 “어느 한 쪽에 패배감을 주지 않는 통일” 또는 “통일은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을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은 통합과정에서 철저히 준수되었다. 그리고 남예멘에 상실감을 주지않기 위하여 여러가지 분야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으로 남북한과 남북예멘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통점

① 남북한과 남북예멘은 단일민족이라는 점과 다 같이 통일열망이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② 지정학적으로 半島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그로 인해 분단되었다는 類似點이 있다.

③ 이념·사상·체제가 상이한 이데올로기 대치상태로 분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한국과 북예멘이 북한과 남예멘에 비하여, 월등히 경제발전과 국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 차이점

① 북한은 김일성 개인숭배가 극심한 데 비하여, 남예멘은 개인우상화가 없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② 남북한은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못했는 데 반하여, 남북예멘은 여러차례의 정상회담으로 통합을 추진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③ 남북한은 인적·물적교류가 없었는 데 반하여, 남북예멘은 어느정도의 인적·물적교류가 실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④ 남북한은 아직까지 UN에 가입하지 못했는 데 반하여, 남북예멘은 UN에 동시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정치실체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예멘의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정상회담과 대화로서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실현 이전에 상부상조, 상호간 공동이익과

변영을 위해 인적·물적교류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국가의 기본이 되는 「통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실현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실현은 주변국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족자결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통일협상을 위한 대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협상의 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第4章 東西獨의 統合過程

第1節 東方政策과 基本條約

1969년 빌리·브란트수상이 집권하면서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대외정책에 관한 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차원에서 동독과 협상한다.

② 양독관계는 특수관계이며 상호 외국이 아니다. 두 개의 독일은 인정하나 국제법적인 두 개의 국가를 인정치 않으며, 양독관계는 內獨關係이다.

③ 서독은 동독을 포함하여 동구제국과 어떠한 무력행사도 거부한다.

④ 서독은 4대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베를린의 지위가 신장되기를 원한다.

⑤ 동독과의 무역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⑥ 「全獨省」을 「內獨省」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全獨代表」라는 공식용어를 사용치 않을 것이다.

서독은 “「독일민족은 하나」라는 理想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두 개의 독일」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할슈타인원칙」을 과감히 폐기하여 동독을 사실상 承認하고, 현재의 경계선을 國境線으로 인정해야 하며, 동독 및 동구제국과도 선린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대전환을 시도했다.

브란트수상은 “서독정부는 새로이 동독에 교섭을 제의하며, 동독의 존재를 독일영토내의 다른 국가로 인정하며, 동등한 자격의 기초 위에서 동독정부와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독일문제 해결없이 구라파의 긴장완화 없고, 구라파의 평화유지없이 동서독의 긴장완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구라파의 통합 없이 동서독의 통합 없다”는 것이었다.

1. 동방정책(Ostpolitik)

브란트수상은 집권 이후 슈미트를 단장으로 하는 對蘇使節團을 소련에 파견하여 향후 추진하려는 동방정책에 대한 소련의 意中을 확인했다.

그리고 1969년 10월 28일 드디어 동방정책의 바탕이 되는 政策基調를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일내 두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는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이 아니라 국내법상의 승인이다.

② 양독은 상호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이나 동독과 일관적인 국가간 관계에 입각하여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

③ 독일에 대한 4대강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존중한다.

④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⑤ 양국간 경제·문화부문에 상호 협력할 것이다.

⑥ 폴란드와 소련에게 무력사용 포기를 위한 협상을 제의한다.

⑦ 「할슈타인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⑧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선에 관한 국경협상」을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방정책은 독일이 당면한 현실문제를 직시하고 소련을 포함한 東歐諸國과의 國交樹立 내지는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긴장상태로부터 평화정착의 길”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은 “동서독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국제정치와 군사적 여건변화, 구라파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와 독일민족의 통일 의지에 따라 통일정책을 구현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브란트는 東歐諸國을 대상으로 하는 「東方政策」과 병행하여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한 「獨逸政策」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는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통일은 역사의 과제로 남겨두고, 우선 시급한 교류협력을 실현함으로써 동서독의 공동번영과 민족화합을 도모하여 독일민족의 공동체의식을 확산시켜 나가야겠다는 「獨逸政策(Deutschl-

and Politik)」을 수립하였다.

우선 동독의 책임있는 당국자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하여 브란트수상은 동독방문을 추진했다.

가. 제 1 차 정상회담

1970년 3월 19일 브란트수상은 동독을 방문하여 에르프르트에서 동독의 빌리·슈토프수상과 「제 1 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동서진영간 데탕트추세는 분단된 동서독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두 진영의 첨단에 선 동서독은 歐洲平和에 저해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 서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의를 했다.

- ① 동서독은 상호 외국이 아니다.
 - ② 양독관계는 「국제법상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 ③ 조약쌍방영역의 사회구조를 강제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다.
 - ④ 상호간 선린관계로 협력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⑤ 「베를린에 대한 4대강국 협정」의 권리를 존중한다.
 - ⑥ 베를린의 지위개선을 위한 4대강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 한편 동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의를 내 놓았다.

① 양독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서독은 「전독일유일대표권」을 포기해야 한다.

② 서독은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해야 하고,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불간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③ 양독은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상호승인, 영토보전, 현 국경선을 존중해야 한다.

④ 양독은 동시에 UN에 가입해야 한다.

⑤ 양독은 핵무기의 사용금지, 화학·세균무기의 제조·사용·저장을 금지하고, 군사비를 50% 감축해야 한다.

⑥ 양독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잔재처리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⑦ 서독은 동독에 대한 부채청산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내용의 제의만 양독의 정상에 의해 나왔을 뿐, 아무런 합의도 없이 회담은 끝나고 말았다. 「제 1 차 정상회담」에서는 서독의 「實際問題」와 동독의 「原則問題」간의 대립이 가장 큰 特徵으로 나타났다.

브란트는 분단克服을 위한 「실제문제」를 解決할 것을 제의했는데, 이는 「실무자급회담」에서 타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정상회담에서 원칙합의에 도달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대하여 슈토프는 「실체문제」보다 「원칙문제」에 중점을 두어 독립된 “두개의 主權國家 認定”을 촉구하여 “국제법상 동등한 獨立國家로서의 관계수립을 위한 條約”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나. 제 2 차 정상회담

1970년 5월 21일 서독의 카셀에서 「제 2 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서독은 「카셀 20개항」⁹⁾의 제의를 했다.

- | | |
|-------------------------------------|---|
| <p>9) 서독의
제의내용
(카셀20개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족의 장래와 결합 및 평화이익을 위한 조약체결. ② 조약은 양독 국회의 비준 요망. ③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적용. ④ 폭력의 포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⑤ 상호독립과 자주성 존중. ⑥ 일방이 타방의 대표권 행사 및 대행금지. ⑦ 독일내 전쟁재발의 방지. ⑧ 평화공존 방해행위의 근절. ⑨ 군축노력의 지지. ⑩ 조약의 효력 발생시기 제시. ⑪ 4대강국의 협정을 존중. ⑫ 4대강국의 권리·의무를 존중. ⑬ 자주권의 인정. ⑭ 상호간 여행·왕래의 확대. ⑮ 이산가족의 문제해결. ⑯ 공동경제지역의 선린관계 유지. ⑰ 제반 교류의 협상개시. ⑱ 교역에 관한 기존협정 유효. ⑲ 장관급 「상주대표부」 전권대표 임명. ⑳ 조약협약후 국제기구에 동시가입. |
|-------------------------------------|---|

한편 동독은 「제 1 차 정상회담」에서 제의했던 내용을 다시 내 놓았다.

동독은 특히 국제적 지위에서의 主權과 同等權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아직 협상에 임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동독으로서는 “생각 할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회담의 종료를 서둘렀다.

그러나 서독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하여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한 관계장관 및 실무접촉을 갖자”고 실무회담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브란트수상은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동독의 盟邦들을 서독에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적으로 동독을 끌어낸다는 목표아래 우회적인 外交接近을 시도했다.

다. 「독·소 불가침조약」의 체결

1970년 1월부터 5월까지 서독은 소련과 「상호무력행사 포기의 원칙」에 관한 사항과 「국경선 준수에 관한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했다.

한편, 동독의 울브리히트는 “서독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동독은 서독과의 대화에 흔쾌히 나서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서독과 소련의 협상은 순조로왔고, 마침내 1970년 8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독·소불가침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전문 5개항으로 다음과 같다.

- ① 구라파의 평화유지
- ② 분쟁의 평화적 해결
- ③ 무력행사의 포기
- ④ 「오데르·나이세선」을 포함한 현재의 국경선 존중
- ⑤ 독일민족의 자결권에 의한 통일의지 존중

이 조약이 체결된 후, 서독의 쉘외상은 소련의 그로미코외상에 보낸 서한(독일민족을 위한 書翰文)에서 “이條約이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自決에 바탕을 두고, 그의 통일을 다시 회복하고, 구라파의 평화를 유지하는 서독의 정치적 목적과 모순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힘으로써 民族自決에 의한 독일의 再統一 可能性을 재확인 시켰으며, 이에 소련도 수락하게 되었다.

라. 「독·파 우호조약」의 체결

서독과 폴란드는 여러 차례 예비회담 끝에 드디어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독·파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條約은 “양국간의 국교수립에 관한 일반사항”을 골자로 하고, 그 밖의 내용은 「독·소 불가침조약」과 유사하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독과 폴란드는 현존하는 국경선을 존중하고, 각기 영토권을 존중한다.

② 양국은 무력사용을 포기한다.

③ 양국은 경제·과학·문화관계를 정상화한다.

서독은 이상의 두 국가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서독의 대동구권 외교 및 동독과의 기본조약 협정에 대한 소련의 拒否要因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동독으로 하여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게 하였다.

한편 4대강국은 1972년 6월 3일 「베를린협정」¹⁰⁾을 체결

10) 「베를린 협정」의 주요내용

- ① 서독과 서베를린간 자유통행 보장.
- ② 서독과 서베를린의 연결유지, 서베를린은 서독영토의 일부가 아니며, 서독에 의하여 통치되지 않음.
- ③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방문 인정.
- ④ 서독은 소련과 동구지역을 여행하는 서베를린 시민의 영사보호국이 되며, 국제적으로 서독의 서베를린 대표권 인정.
- ⑤ 서베를린에 소련영사관 설치.
- ⑥ 서독의 법률은 서베를린에 적용되지만 서독의 연방의회는 서베를린에서 회합을 가질 수 없음.

함으로써 동서독간의 難題들을 풀어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서독간에는 대화와 협상의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¹¹⁾

2.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

1972년 12월 21일 동베를린에서 서독의 바르外務次官과 동독의 볼外務次官에 의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었다.

全文 10개항으로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국은 「동등자격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정상적 선린관계를 발전시킨다.

② 양국은 UN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독립·자주성 및 영토보전의 존중, 자결권, 인권보호 및 무차별에 관한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③ UN헌장에 따라 양국은 그들의 분쟁문제를 해결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그 사용을 금지한다. 양국은 현재나 장래에도 현존 경계선의 불가침을 재확인하며, 그들의 영토보전을 무조건 존중할 책임이 있다.

11) 「東西獨 基本條約」締結이 있기까지는 頂上會談 2回, 長次官會談 70回, 실국장급회담 200回, 모두 2년간 무려 272回の 會談끝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④ 양국은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다른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없다.

⑤ 양국은 구라파諸國間의 평화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구라파에서의 안전과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쌍방은 구라파내에서 무력과 군비를 감축시키는 노력을 지지하며, 이로 인하여 참가국의 안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쌍방은 구라파내에서의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제적 감시아래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를 목표로 하여, 특히 핵무기와 기타 대량학살무기 분야에 있어서의 군비제한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⑥ “양국의 통치권이 각자의 영토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쌍방은 양국의 對內外問題에 있어서 相互獨立性和 自主性を 존중한다.

⑦ 양국은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人道的인 문제를 규정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

쌍방은 본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이익을 위하여 경제·학술·기술·교통·사법·우편·통신·보건·문화·체육·환경보호 등의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⑧ 양국은 「常駐代表部」를 서로 교환한다. 「상주대표부」는 쌍방의 정부 소재지에 각기 설치한다.

⑨ 양국은 “본 조약의 체결 이전에 쌍방이 각기 체결한 쌍무적·다무적 국제조약과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다.

⑩ 본 조약은 批准을 요하며, 비준에 관한 覺書를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證據로서 양국의 全權代表는 본 조약에 署名한다.

이 조약의 체결은 「동서독통일헌장」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안으로는 독일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苦痛을 경감시키려는 정치적인 명분을 찾고, 동서독간의 새로운 關係改善을 摸索함으로써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共存共榮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편 밖으로는 歐洲平和와 동서진영의 緊張緩和에 기여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第2節 交流協力の 過程

동서독은 기본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 1973년 9월 18일

에 UN에 동시 가입했고, 그 후 1975년 「歐洲安保協力會議」에서 調印하여 양국이 다 같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위한 諸般協定¹²⁾이 순조롭

12) 「諸般協定」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여행 및 구역간 교류협정(1971. 12. 20)
 - ② 一般通行協定(1972. 5. 8)
 - ③ 자동전화의 개통 및 증설에 관한 협정(1972. 7. 24)
 - ④ 경계지역 河川정비와 확장에 관한 협정(1973. 9. 20)
 - ⑤ 旅行者의 무료 입원가료에 관한 보건협정(1974. 4. 25)
 - ⑥ 부양료 支拂移轉에 관한 협정(1974. 4. 25)
 - ⑦ 뒤베크灣 부근 영해 및 漁業협정(1974. 6. 29)
 - ⑧ 쓰레기·下水流入에 따른 보상협정(1974. 12. 10)
 - ⑨ Swing 借款 규칙의 연장에 관한 협정(1974. 12. 12)
 - ⑩ 우편 및 전화에 관한 협정(1976. 3. 30)
 - ⑪ 에거맏地域 送水管 설치에 관한 협정(1978. 5. 3)
 - ⑫ 북부高速道路(베를린→함부르크) 건설 및 왕래에 관한 협정(1978. 11. 16)
 - ⑬ 홍수방지용 貯水池 설치·운영에 관한 협정(1978. 11. 29)
 - ⑭ 獸醫師 협력에 관한 협정(1979. 12. 21)
 - ⑮ 鐵道複線(베를린→헬름슈테르) 건설 및 운하(미테레랜드→카날), 高速道路(바르타→헤레스하우젠) 건설에 관한 협정(1980. 4. 30)
 - ⑯ 東西獨 이주협정(1981. 4. 25)
 - ⑰ 靑少年 교류협정(1982. 6. 18)
 - ⑱ 서베를린地域 電鐵경영권 이전협정(1982. 6. 18)
 - ⑲ 文化협정(1986. 5. 8)
 - ⑳ 環境保護에 관한 협정(1987. 9. 8)
 - ㉑ 放射能 分野의 정보 및 경험교환에 관한 협정(1987. 9. 8)
 - ㉒ 科學技術 협력에 관한 협정(1987. 9. 8)
- 이 밖에도 15개 정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게 진행되어 본격적인 「共存繁榮의 時代」를 개막하게 되었다.

1. 인적교류

동서독의 인적교류는 1987년에 약 1천만명, 1988년에 약 5백만명에 이르렀고¹³⁾, 1989년 초에는 동독주민 약 20만명이 서독으로 탈출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까지 인적교류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동서독의 통합이전의 인적교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독주민의 동독방문

동독은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을 허용하고, 연간 60일간 체류를 허용했다.

한편 서독은 동독의 초청을 받은 상공인·문화인·체육인·종교인들이 동독방문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독주민의 동독방문은 미리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역에 따라 방문할 수 있으며, 가족과 친지를 자유로이 상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자(VISA) 발급시 5마르크(서독화폐 5DM)의

13) 서독의 「내무성」 公式發表

수수료와 방문지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내야하고, 동독에 체류하는 일수에 따라 1일당 25마르크씩 계산하여 동독화폐로 「强制換金」¹⁴⁾을 해야 한다.

나. 동독주민의 서독방문

동독주민이 서독을 방문할 때에도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독은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시 「강제환금」이나 「통행료」를 받지않고 아무런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동독주민의 서독방문시 서독은 100마르크씩 「여행 지원금」을 지불했다¹⁵⁾.

14) 「强制換金」이란, 동서독의 화폐가 같지 않으므로(1:4의 환율) 서독 화폐를 동독화폐로 강제적으로 환금하는 것을 말한다. 환율에 관계없이 1:1로 환전한다. 서독주민이 동독 방문을 마치고 귀국할 때, 동독화폐의 잔금은 다시 교환해 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서독은 동독 방문자의 동독화폐를 전국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정부가 손해를 보면서 교환해 주고 있다. (단, 16세 미만은 면제됨)

그러나 이 제도는 1990년 1월 1일부터 동서독의 합의에 따라 폐지되었다. 따라서 VISA 발급도 생략되고 자유개방이 실현되게 되었다.

15) 동독주민이 서독방문시 매 1인당 100DM씩 여행지원금을 서독정부가 지불해 왔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동독주민의 어비는 15DM(환화 6천원상당) 밖에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독은 그 밖에 「열차특급료면제」, 「각종 교통요금할인」 등, 특혜를 주었다.

서독방문일수도 연간 60일로 연장했으나 사실상 방문일 수는 제한받지 않았다.

또한 긴급한 家事問題가 발생했을 때, 哀慶事에는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었다.

다. 동독주민의 서독이주

1981년 4월 25일 「동서독이주협정」에 따라 동독주민의 서독이주가 실현되었다.

1983년 처음으로 동독주민 8천명이 서독으로 이주 해 왔고, 그 후 해마다 약 3만명이 이주해 왔다. 통일되기 전까지 약 40만명이 이주해 와 서독에 정착했다.¹⁶⁾

서독은 동독에게 이주자의 「교육비 반환」¹⁷⁾ 및 「Swing借款」¹⁸⁾을 해마다 제공 해 왔다.

16) 1988년 3만5천명의 西獨移住者中 1만명은 단순 이주자, 2만5천명은 이산가족재결합된 것으로 내독성은 발표했다. 서독은 이들에게 실업수당, 동독직장근무년수를 연금에 합산, 특별대부혜택, 노인연금지급 등, 특혜를 주었다.

17) 「教育費返還」이란,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자의 학력에 따라 동독에서 이수한 교육비를 현재 서독의 교육비로 환산하여 동독에게 반환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1989년의 20만여명에 달하는 서독 이주자에 대한 「교육비 반환」은 아직 아무런 발표가 없다.

18) 「Swing借款」이란, 일정기간 원금과 이자를 연기해 주는 차관으로서 「無利子 無償還借款」을 말한다. 서독은 7년을 1기로 삼고 10억DM의 Swing 借款을 제공해 왔다.

라. 동독의 베를린장벽 개방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크렌츠 국가평의회 의장 겸 당 서기장은 「베를린장벽 및 국경선 개방」을 선언했다.

그리하여 동독주민 약 5백만명이 서베를린 및 서독으로 넘어왔다가 되돌아 가는 진기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들은 부란덴부르크문 앞에서 “게르만의 영광을 위하여” 삼페인을 터뜨리면서 통일을 방불하리 만큼 동서독주민이 하나되어 「역사의 밤」을 맞기도 하였다.

2. 경제교류

동서독은 기본조약의 체결 이후, 「단일경제단위원칙」에 입각하여 외국무역이 아닌 域內交易(영내교역)으로 규정하고 「無關稅原則」(무관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실시해 왔다.

서독은 유류, 섬유제품, 농산물, 갈탄 등을 비롯한 에너지원과 원자재를 동독에서 수입하고, 동독은 철강, 화학제품, 공업생산재, 기계류 등을 서독에서 수입했다.¹⁹⁾

19) 동서독은 경제교류에 있어서 「輸入」을 「到着」, 「輸出」을 「供給」, 「貿易」을 「交易」이라는 用語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國內交易(영내교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표 1〉 서독과 동독간의 수출현황

(1988. 12 현재)

연도	서독에서 동독으로 수출		동독에서 서독으로 수출	
	금액(단위: 100萬마르크)	비 고	금액(단위: 100萬마르크)	비 고
1980	5,870		5,850	
1981	6,130	증가	6,350	증가
1982	7,080	증가	6,990	증가
1983	7,680	증가	7,560	증가
1984	7,250	감소	8,240	증가
1985	8,590	증가	8,160	감소
1986	7,400		7,300	
1987	7,800		7,100	
1988	6,800		7,300	

出處: 內獨省 資料

서독은 동독에게 Swing借款을 비롯하여 차관기간의 연장, 對東獨銀行 借款에 대한 정부보증, 10억DM借款 承認 등 많은 특혜를 제공해 왔다.

1984년 12월 양독의 국경지역에 散在해 있는 「가성칼리」를 채굴하기 위한 協定」을 체결했다.

그리고 1984년 11월 「자동차합작생산협정」을 체결하여 서독의 폴크스바겐자동차회사는 동독의 리첸츠에 공장을 건설하고 연간 30만대씩을 합작생산하여 왔다.

3. 체육교류

동서독의 체육교류는 분단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1955년 「올림픽단일팀구성」에 합의하여, 1956 「멜버른올림픽대회」, 1960년 「로마올림픽대회」,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했다.

올림픽단일팀은 국기는 黑・赤・朱黃色바탕에 올림픽마크를 넣은 三色旗(독일제국, 분단 이전의 국기)를 사용했고, 국가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를 연주했으며,

〈표 2〉 동서독의 체육교류 현황

연도	교 류 횟 수 (회)		참가인원(명)	
	서독 및 서베를린 지역개최	동독 및 동베를린 지역개최	서독측	동독측
1974	19	16	295	191
1975	28	25	376	235
1976	29	32	316	307
1977	27	35	298	335
1978	41	33	516	351
1979	35	33	435	301
1980	26	30	—	—
1981	32	31	—	—
1982	37	41	—	—
1983	37	38	—	—
1984	40	33	—	—
1985	36	35	—	—
1986	43	41	—	—

出處：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ahres Bericht

1984(Bonn : 1985). p.43 : 국토통일원, 「동서독 스포츠 협상 사례연구」(서울:1988), p.54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Germany”라는 英文標識를 사용했다.

서독은 1968년에 뮌헨올림픽(1972년 개최)에 동독의 참가를 허용했다.

그 외에도 서독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제체육대회에 동독의 참가는 물론, 서독내에서의 동독 국기게양, 국가연주를 허용했다.

1974년 「체육관계에 관한 의정서」의 합의에 따라 더욱 활발한 체육교류를 실현하게 되었다.

4. 청소년교류

1982년 9월 20일 「청소년교류협정」이 체결되었다.

서독의 「서독연방청소년협회」와 동독의 「자유독일청년회」 사이에 긴밀한 유대를 갖고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

〈표 3〉 동서독의 청소년교류 현황

(단위 : 명)

연 도	서독→동독	동독→서독	비 고
1982	22,000	1,220	
1983	24,000	1,250	
1984-6	—	—	다소침체
1987	77,000	3,760	호네커 서독 방문시 청소년 교류 재개 합의
1988	78,000	5,000	동독 166개 단체

교류를 실현해 왔다.

서독의 중·고등학생의 동독으로의 수학여행도 실시되었다. 대개 재학중 1-2회에 걸쳐 단체로 수학여행을 가며, 주요도시관광, 사적지, 박물관 등의 견학 등을 코스로 하여 7-10일간의 여정으로 실시되었다.

서독에서 수학여행의 수속절차는 학교와 여행사의 협의를 거쳐, 내독성에 신고한 후, 정부로부터 「여행보조금」²⁰⁾을 수령하고 출발하면 된다.

그 밖에 동독에서 서독을 방문하는 청소년에게 서독은 1인당 20DM씩 보조금을 지급했다.

5. 체신교류

동서독의 체신교류는 분단이후 계속되어 왔다.

1970년 까지는 수동전화가 34선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설되어 장거리직통전화회선이 1,517회선이 되었고, 통화량도 급증하여 연간 약 4천만통화에 이르렀다.

한편 우편물교류도 1988년 「우편·전화소통료 청산협정」이 체결된 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 서독정부는 중·고생의 동독 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교통비, 체재비를 다음과 같이 보조해 주었다. 기차요금은 전액무료, 전세버스대절료 85%부담, 1인당 1일 체재비 5DM씩(한화 약 2,000원 정도) 보조해 주었다.

1976년 부터 우편·전화소통은 국제우편이 아닌 국내우편으로 취급하기로 합의한 「우편·전화협정」에 따라 국제수수료, 세관용 내용설명서 등, 국제우편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생략하고, 간소하고 편리한 교류를 증진해 왔다.

그리고 서독은 해마다 8천5백만DM의 체신요금을 동독에게 지불해 왔다.

1983년에 서독은 1990년까지 매년 2억DM의 체신요금을 동독에게 지불하기로 한 「체신협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동서독의 우편교류는 1일1회씩 일정한 장소에서 상호교

〈표 4〉 동서독 우편교류 현황(1988년말 현재) (단위: 100만통)

연 도	편 지		소 포	
	서독→동독	동독→서독	서독→동독	동독→서독
1980	75	70	27	9
1982	74	98	25	9
1983	59	88	25	9
1984	62	85	25	9
1985	61	100	24	9
1986	63	105	24	9
1987	65	100	25	9
1988	80	95	24	9

出處: 內閣省 資料

환한다. 그 중 편지가 1억6천만통, 소포 및 소화물은 3천4백만통이나 되었다. 특히 편지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발송하는 것이 많고, 소포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우송되는 것이 많았다.

6. 문화교류

동서독의 문화교류도 다른 분야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매우 활발했다.

1986년 5월 6일 「동서독문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문화·예술·교육·학술·출판·도서·기록문건·언론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가. 미술교류

미술교류는 「박물관전시품의 교환전시」를 비롯하여 「인상주의파 전시회」 등이 다채롭게 교환 전시되었다.

1986년 동독의 드렌스텐에서 전시된 「바로크 전시회」와 1987년 드렌스텐의 「서독에서 온 그림들 전시회」에는 서독 주민 10만여명이 관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7년 10월 서독의 본에서 개최된 「동독현대조각 전시회」도 큰 성황리에 마쳤다.

나. 언론·방송교류

동서독의 언론교류는 매우 활발했다. 통일 이전 까지만 해도 서독의 본에 동독의 언론인 6명이 상주해 있었고, 서독의 TV·라디오 등, 17개의 언론사 특파원 19명과 편집기자 32명이 동베를린에 상주하고 있었다.

동서독은 아무런 제한없이 상대방의 TV·라디오를 시청·청취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방송교류는 동서독이 “상호간에 비방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실현되었고,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전파송출이 제한없이 송수신될 수 있었다.

1987년 서독의 제1TV(ARD)와 제2TV(ZDF)는 동독의 국영TV와 「프로그램 및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동서독의 신문·잡지교류는 서독에서 출간된 신문·잡지가 동독과 동베를린에 아무런 제한없이 반출·발송되고, 동독주민들이 자유로이 구입·구독할 수 있었다.

다. 학술교류

동서독은 모두 100권으로 편성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독일어대사전」을 편찬했다. 당초 그릴형제의 共著인 「독일어사전」 16권을 무려 20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이처럼 방대한 대사전을 편찬하였다.

동서독은 정치·이데올로기분야가 아닌 자연과학분야의

연구논총, 사전류 등의 발간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소모되는 경비는 대부분 서독이 부담했다.

그리고 學術誌·연구논총·수집사료를 출간할 경우의 협력방법은 매우 다양했다. 발행자와 편집자의 일부는 서독내 혹은 동독내에 그들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인 처리와 인쇄는 대개 동독에서 이루어지고, 그에 필요한 인건비, 인쇄비는 협약의 범위내에서 서독이 지불했다.

한편 저명한 학자들의 「학술강연회」도 자주 교류되었다. 대개의 경우 동독학자들을 서독에서 초청하였다. 동독의 스테판·헤임은 서독의 8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문학강연회」를 가졌고, 동독의 헤르만·칸트도 서독의 여러 대학에서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第3節 統合推進 經緯

1. 동독의 변혁

소련 및 동구권의 개혁·개방의 물결이 급기야 동독에도 밀어닥쳤다.

1989년 6월 5일 동독시민들이 동베를린·부다페스트·프

라하에 있는 「西獨常駐代表部」 및 西獨大使館으로 탈주했고, 현지의 서독대사관과 「서독상주대표부」는 결국 포화상태에 이르러 폐쇄할 수 밖에 없었다. 즉, 8월 6일 부다페스트의 서독대사관이 폐쇄되었고, 동독주재 영국·미국대사관도 폐쇄되었다.

1989년 9월 초순 동독의 젊은이들이 헝가리를 거쳐 혹은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서독으로 移住하면서 동서독 통일논의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동독을 방문하여 페레스트로이카에 동독도 함께 참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도모할 것을 제의했지만, 호네커는 이를 거절했다. 그 결과 동독시민들은 개혁·개방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서독으로 이주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5백여명의 동독인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로 집단탈출하여 부다페스트·빈의 관청에 수용되었고, 헝가리 국경수비대들이 탈주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9월 4일 라이프히치에 소재한 니콜라이교회 앞에서 1천2백여명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한편 서베를린에 「임시수용소」가 설치되었고, 서독은 탈출자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9월 25일에는 대규모의 시위가 라이프히치에서 다시 발발했다. 약 8천여명의 시위대는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약 7천여명의 탈출자들이 특별기관차편을 이용하여 서독으로 집단 탈출했다.

그리고 시위대는 점점 늘어서 2만여명으로 불어났다. 또 약 1만여명의 탈출자들이 특별기관차편으로 헝가리에도착했다.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 주요도시로 확산되어 동베를린에서 2만5천여명, 라이프히치에서 12만여명, 드렌스텐에서 1만여명이 연일 시위가 계속되었다.

드디어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호네커는 사퇴했고, 후임으로 에곤·크렌츠 국가평의회 부의장이 신임 당서기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크렌츠는 「북경대학살」의 옹호자로 알려져 곳곳에서 불신임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시위는 계속되었고, 「인간사슬」을 만들어 경찰본부를 에워싸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2백만명을 넘게 되었고, 탈출자는 37만명이나 되었다.

마침내 동독의 내각은 11월 8일 총사퇴하게 되었고,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개방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동독인구의 4분의 1인 430만명의 동독시민들이 서독행 VISA를 발급받고, 베를린장벽을 넘어와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 모여 “게르만의 영광”을 위해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

결국 크렌츠는 실각되고, 11월 13일 한스·모르도프가 내각수상에 선출되었다. 모르도프는 연립정부²¹⁾의 수반으로서 “당과 정부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2. 동서독의 통일정책

가. 서독의 통일정책

1989년 11월 28일 서독의 헬무트·콜首相은 「3단계 10개항의 통일정책」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段階〉

제1단계：동독에서 自由選舉를 실시.

제2단계：동서독간에 경제, 환경, 기타문제 협력을 위한 「共同委員會」의 설치.

제3단계：「國家聯合」의 형성.

21) 연립정부의 구성은 SED 16명, 자유민주당 4명, 기민당 3명, 농민당 2명 등으로 구성했다.

〈10개항의 統一方案〉

- ① 의료 및 재정부문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을 제공.
- ② 통신망 확충 및 고속전철 부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
- ③ 동독 공산당은 정치범 석방 및 市場經濟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
- ④ 최근 모르도프首相의 「共同同伴者」 제의를 수락.
- ⑤ 聯合機構를 형성, 이를 발판으로 議會共同體를 포함하는 동서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치문제 등 논의.
- ⑥ 통일문제는 歐洲統合 및 東西關係의 개선과 연계시켜 실현.
- ⑦ 구주공동체(EC)는 동독을 포함한 東歐國家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동독과 「무역협력협정」을 체결.
- ⑧ 歐洲安保協力會議(CSCE)를 환경보존 또는 「동서무역협력촉진기구」 등으로 성격을 전환.
- ⑨ 군비축소에 박차를 가할 것.
- ⑩ 동독 및 歐洲安定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

나. 동독의 통일정책

1990년 2월 1일 동독의 모르도프首相은 「4단계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단계 : 군사조약 탈퇴

동서독은 NATO와 WTO에서 탈퇴하여 군사적 중립을 유지.

제 2 단계 : 경제통합

화폐 및 경제부문, 교통망, 법률제도를 통합하는 「연방」을 구성.

제 3 단계 : 공동기구 구성

중앙 및 지방의회와 정부기구 등을 통합하는 「공동정책기구」를 구성.

제 4 단계 : 주권이양

이들 공동기구에 양국의 주권을 이양하는 궁극적인 통일을 하기 위하여 연방제하에서의 총선거를 실시.

이와같은 양독의 통일방안은 형식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내용에 있어서 서독은 군사문제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반면, 동독은 군사조약에서의 탈퇴를 주장한 것이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서독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중점을 두었는데 비하여, 동독은 中立化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 2월 10일 콜과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에서 「독·소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콜은 기자회견에서 “소련은 한 국가내에서 살고자하는 독일인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통일 그 자체의 방식과 시간을 규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독일인의 일이다”라고 고르바초프가 말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 콜과 모르도프는 서독의 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通貨單一調整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했다.

3. 동독의 자유총선거

1990년 3월 18일 동독은 최초의 자유총선거에 우파연합인 「獨逸聯盟」²²⁾이 압승함으로써 통일의 전망을 밝게 해주었다.

자유총선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정당별 지지도

정	당	지 지 율(%)
기	민 당	40.8
사	민 당	21.9
민	사 당	16.4
자	민 당	5.3
농	민 당	2.2
독 일 사 회 동 맹		6.3
기	타	7.1

22). 「독일연맹」이란 기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 정당을 말함.

그리고 각 정당별 의석분포를 살펴보면 총 400석의 의석중 독일연맹(기민당 및 보수파)이 193석(48.15%), 사민당이 87석(22%), 민사당(구 공산당)이 65석(16.33%), 자민당이 21석(5.22%), 기타(녹색당 등) 34석(8.40%)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급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우파연합인 독일연맹이 제1당이 되었고, 40여년간 동독을 통치해 온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이 제3당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자유총선거에서 압승한 독일연맹은 서독의 基民黨과 제휴한 동독의 基民黨을 주축으로 하는 保守聯合으로서, 가능한 한 빠른 통일방법을 취하며, 동서독의 화폐통합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동독 기민당의 승리는 곧 바로 서독 기민당의 승리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공산당의 「들러리 정당」 노릇만 해 왔던 동독의 기민당의 단독 유세에는 몇 천명이 모였지만, 서독 기민당의 콜수상의 지원유세에는 수십 만명의 군중이 운집했기 때문이다.

4.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에 관한 條約」의 체결

1990년 5월 18일 동서독은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에

관한 조약」을 서독의 본에서 체결했다.

이 조약의 구성을 살펴보면 前文과 6 장 38조로 되어 있다.

제 1 장 총칙(제 1 조~제 9 조)

제 2 장 通貨同盟에 관한 규정(제10조)

제 3 장 經濟同盟에 관한 규정(제11조~제16조)

제 4 장 社會保障同盟에 관한 규정(제17조~제25조)

제 5 장 國家豫算과 財政(제26조~제34조)

제 6 장 結論(제35조~제38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총칙

쌍방은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의 마르크를 통일된 통합지역의 공동통화로 한다. 서독연방은행은 이 통화영역의 화폐발행은행이 된다.

○경제동맹의 기초는 쌍방에서 共同市場經濟 秩序로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용한다.

○사회보장동맹은 노동법질서와 능력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균형원칙에 의한 社會保障制度를 실현한다.

○종래의 동독헌법 가운데 이와 저촉되는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쌍방은 본 조약의 실시에 있어서 국내법에 준하여 정 부간에 共助를 한다.

○동독은 실효적·잠정적 法保護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법적보호를 받는다.

○본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을 仲裁法院의 결정에 부탁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C 法院의 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 의해 처리된다.

○쌍방은 「合同政府委員會」를 구성한다.

② 통화동맹에 관한 규정

○쌍방은 통화동맹의 설립에 의해 서독마르크는 全通貨地域內에서 지급수단·청산수단·가치보장수단이 된다.

○서독연방은행은 通貨安定目的을 위해 그 자신의 책임 하에 쌍방정부의 지시와 관계 없이 全通貨地域에서 통화유통과 신용조달을 연방은행의 제도에 따라 규율한다.

○임금·급여·장학금·연금·집세·地賃 등, 정기적 지불은 1:1의 비율로 교환한다.

○동독마르크로 된 債權, 債務는 「1서독마르크 대 2동독마르크」의 비율로 교환한다.

○동독의 화폐교환은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동독에 본부를 둔 기관들에만 적용되며, 동독의 銀行口座를 통해

서만 이루어진다.

○동독에 거주하는 개인의 예금은 일정 한도액 까지를 1:1로 교환하고, 연령별로 한도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경제동맹에 관한 규정

○동독은 경제·재정정책적 조치들이 사회적 시장경제와 조화되는 것을 보장한다.

○동독은 COMECON諸國과 실행하고 있는 對外經濟關係를 존중하면서 EC의 法과 經濟政策目標에 일치되도록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

○동독은 對外經濟交流에 있어 「自由貿易의 기본원칙」, 「GATT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동독은 새로운 시장조건에 맞게 기업의 구조적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동독은 농업·식량에 대한 EC규정에 따라 價格維持制度和 對外保護制度를 도입하여 서독의 농산물가격에 부합시킨다.

○쌍방은 「獨逸環境聯盟」의 설립에 협력한다.

④ 사회보장동맹에 관한 규정

○동독은 단결권, 임금자주결정권, 노동쟁의권, 노동협

약, 노사공동결정권, 해고보호 등, 서독의 법률을 채택한다.

○동독은 사회보장제도를 서독의 수준에 이르도록 개선·도입한다.

○동독은 서독의 「雇傭促進法」과 일치하는 고용촉진을 포함한 「失業保險制度」를 도입한다.

○동독은 「年金法」을 서독의 임금, 부담금원칙에 기초하는 「年金保險法」에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동독은 「醫療保險法」을 서독의 것에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동독은 「産災保險法」을 서독의 것에 일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동독은 서독의 「生活保護法」에 일치하는 「社會保障制度」를 도입한다.

○과도기간중 동독이 필요경비를 충당치 못할 경우, 서독은 동독에게 財政補填을 한다.

⑤ 국가예산과 재정에 관한 규정

○동독예산은 서독의 예산구조에 따라 편성한다.

○동독의 지방기관들은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자를 감소시키는 데 힘쓴다.

○起債와 補償支給은 동서독 재무장관의 합의에 의한다.

○서독은 예산적자를 補填하기 위해 1990년 하반기에 220억마르크, 1991년에 350억마르크의 財政支援을 한다.

○쌍방은 關稅領域이 본 조약의 적용영역도 포괄한다는 데 합의한다.

○쌍방은 「租稅」 및 「獨占禁止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情報를 교환한다.

⑥ 결론

○본 조약은 동서독이 제3국과 체결한 「국제법상 조약」은 침해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條約은 동서독인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條約의 조인당시 서독의 콜首相은 “자유통일 독일탄생”이라며 “동서독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운명은 이제 분리할 수 없도록 뒤섞였다. 이제 우리는 自由統一獨逸에서 공동의 미래를 짊어지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동독의 드메시에르首相도 “독일통일의 실질적 실현이 시작되었다. 통화·경제·사회통합 조약의 체결은 통일독일의 과정을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하였다.

5. 「2+4협정」의 체결

1990년 5월 5일 서독의 본에서 시작된 「2+4회담」은 4차에 걸친 회담²³⁾을 마지막으로 하여 동서독과 미·영·불·소가 독일통일의 대외관계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다.

「2+4회담」에서 가장 큰 장애는 통일독일의 NATO 가입 문제였다.

이 문제는 제3차 회담시 소련측이 대폭 양보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때부터 「2+4회담」은 실무문제만 남겨놓은 상태가 되었다.

서독은 “「오데르·나이세선」 현 국경선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주변국가들의 불안도 말끔히 씻어주었다.

제4차 회담에서 부각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에서의 소련군 철수비용 부담의 문제이다.

그러나 서독은 1994년 까지 76억\$을 소련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23) 「2+4회담」의 4차례 개최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차회담 : 1990년 5. 5. 본에서 개최

제 2 차회담 : 1990년 6. 7. 동베를린에서 개최

제 3 차회담 : 1990년 7. 17. 파리에서 개최

제 4 차회담 : 1990년 9. 12. 모스크바에서 개최

둘째, 소련군의 철수 후, 동독영토내 핵무기 배치금지와 NATO의 군사훈련금지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독이 “통일독일의 군대를 37만명 이하로 유지하고, 化生放武器를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셋째, 서독주둔 미군의 추가철수 문제이다.

소련은 동독에서 완전 철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군도 7~8만명 정도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소간의 막후 접촉으로 합의하게 되어 원만히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1990년 9월 12일 「2+4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통일독일은 서독과 동독의 영토 및 전체베를린으로 구성되며, 통일독일과 폴란드는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협정을 통해 현재의 국경을 인정한다.

② 통일독일의 헌법에 국가간의 평화관계를 저해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그러한 의도아래 수행된 침략전쟁 준비와 같은 행위는 위헌이며, 응징돼야 할 위반행위임을 명시한다.

③ 통일독일은 핵·생물·화학무기의 생산·보유·통제에 대한 포기입장을 재확인한다. 3~4년내에 군병력을 37

만명 이하로 감축하여야 한다.

④ 통일독일과 소련은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 있는 소련군의 주둔조건 및 기간, 그리고 1994년을 시한으로 한 소련군의 철수 완료 등의 문제를 협정을 통해 해결한다.

⑤ 현 동독영토 및 베를린에 소련군이 주둔하는 동안 미·영·불의 군대는 통일독일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베를린에 주둔한다.

⑥ 전승국들에 귀속되어 있었던 통일독일의 권리들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한 및 의무와 더불어 본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⑦ 미·영·불·소는 현시점부터 베를린과 전독일 영토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 발동을 중지한다.

⑧ 본 협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본 협정은 관련국 의회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⑩ 본 협정의 원문은 서독정부가 보관한다.

6. 정치적 통합

동서독의 정치적 통합이 구체화된 것은 1990년 7월 1일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에 관한 조약」을 서둘러 발효시

켜 통일을 되돌릴 수 없게 기정사실화한 일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미·영·불·소 4대강국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제통합부터 실현함으로써 4대전승국들이 정치통합에 반대할 수 없도록 하는 機智를 발휘하여 「2+4協定」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1990년 8월 31일 동서독은 “제2 국가조약”²⁴⁾이라 불리우는 「政治條約」을 체결하여 통일 이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文書를 만들었다.

서독의 연방의회와 동독의 인민의회의 批准을 거침으로써, 통일실현은 10월 3일 宣布만 남은 셈이 되었다.

이 조약은 본문 제45조와 3개의 부속문건, 1개의 의정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조약은 서독의 기본법 중에서 불가피한 조항만 개정하였다.

그 밖에 통일의 기본원칙을 확정하였고, 성질상 쉽게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4) 「제 1 국가조약」은 1990. 5. 18. 「동서독 국가조약」 체결.

「제 2 국가조약」은 1990. 8. 31. 「동서독 국가조약」 체결.

제 1 장 편입의 효력

제 2 장 기본법

제 3 장 법령의 조정(서독법령의 과도기적 적용, 동독법령의 계속적용, EC법 적용문제 등)

제 4 장 국제법상 조약 및 합의사항

제 5 장 공공행정과 법

제 6 장 공공재산과 재무

제 7 장 노동·사회·가족·부녀자·건강과 환경보호

제 8 장 문화·교육·학문·스포츠

제 9 장 경과 및 종결규정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① 국가와 헌법 ② 소유권, 재정, 재산의 사유화 ③ 노동,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조항들이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의회에서 “서독의 基本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다”는 결의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통일된 독일은 두 차례의 선거를 거쳐 연방국가로 통합되었다.

10월 13일 동독은 5개의 주의회²⁵⁾와 정부를 구성하기 위

25) 5개주 : ① 부란덴 부르크 주 ② 맥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③ 작센주 ④ 작센-안할트주 ⑤ 튀링엔 주로 東獨은 西獨에 편입되며, 통일독일은 15주, 1시(베를린)로 된 연방국가가 된다.

한 선거를 하였고, 12월 2일 통일독일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首相을 선출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第4節 統合의 敎訓

아마도 今世紀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중의 하나는 이데올로기로서 共產主義가 퇴조하는 가운데 동서독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한 사실일 것이다.

半世紀동안 대치상태에 있던 異質社會가 한 방울의 流血도 없이,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시일안에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통일의 형태도 기존의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통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우리의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동서독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데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직접적인 導火線이 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페레스트로이카가 계기가 돼서 東歐에 體制改革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東獨의 지도자들이 體制競爭에서 사회주의의 패배를 自認하면서 독일통일은 급진전되었다.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통일은 外勢나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民族스스로의 결의와 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만 해도 동서독의 통일문제를 미·영·불·소 4대점령국은 물론 東西 유럽국가들도 국제회의의 議題로조차 올려놓지 않았다. 즉 동서독의 통일이 기존 구라파의 질서를 깨뜨리고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될까 우려했던 것이다.

둘째,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씩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라는 점이다.

서독정부의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對東獨政策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일찍이 동서독정상회담, 동방정책구현, 동서독기본조약체결, 제반협정체결 등으로 동독과의 인적·물적교류를 증진해 왔고, 이를 계기로 동독에게 많은 원조를 주워 왔다는 점이다.

셋째, 동서독의 통일실현에서 배울 수 있는 보다 큰 敎訓은 정치·경제 및 사회복지면에서 市場經濟體制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서독이 평화적으로 동독을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동독 국민 스스로가 社會主義體制를 버리고, 서독의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동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를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서독은 資本主義 경제체제이면서도 일반생활 수준이나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이 사회복지면에서도 동독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동독국민들은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이것이 평화적인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 정치통합 이전에 먼저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4대 전승 국가들로 하여금 정치통합에 반대할 수 없도록 機智를 발휘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뒤 떨어진 동독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동독의 대내외 부채, 예산적자를 비롯하여 도로·전기·통신·기간산업정비 등, 막대한 재정을 떠 안으며 통일로 가는 그 力量과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

서독은 통일을 위한 이른바 「독일판 마샬플랜」으로 1, 150억마르크(약 700억\$)를 조성할 계획인데, 경제전문가들은 실제로 統一費用이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2조~2조7천억마르크 가량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돈으로 샀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서독을 배우고, 북한은 동독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독의 정부당국이 일관된 통일정책을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국론이 일치되어 국력을 모아 주었던 사실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 하고, 시장경제체제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우월성을 북한주민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통일을 위한 基金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동독을 따라 배움으로써 대남적화야욕을 하루 빨리 버리고,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민족공동체의식으로 돌아와 진정한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인 통일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第5章 結 論

우리는 남베트남의 패망원인에서 自主國防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국민계층간의 위화감과 국론분열이 급기야 自由・平和・人間尊嚴性を 잃은 것을 깨달아야 하며, 불순좌경세력의 발호가 드디어 民主國家를

삼켜버린 비극적인 종말을 깨달아야 한다.

한편으로 우리는 남북예멘의 통일실현에서 끊임없는 협상과 타협으로 「통일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룩한 것에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통일헌법의 제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동서독의 통일실현에서 民族共同體意識을 바탕으로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의 共同繁榮을 위해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오랜동안 증진함으로써 통일여건을 성숙시켜 相扶相助해오다가 결정적인 통일의 시기가 도래하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民族이 和合하고 團結하여 民族自決의 力量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았다.

특히 동서독이 이 처럼 빨리 平和統一을 이룩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東歐圈과 東獨에 “體制改革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즉 東獨의 指導者들이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체제의 敗北를 自認하면서 독일통일은 급진전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바람”이 아직 북한에 까지 미치지지는 못하고 있으나, 최근에 있어서 소련정부의 움직임이나 소

련의 아시아정책, 특히 한반도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의 인식변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력이 加重될 것은 自明하다.

최근의 脫冷戰 및 脫理念의 국제정세 변화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밖에 없으며, 북한도 더 이상 역사의 조류를 외면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한반도의 통일도 예상보다 빨리, 그 어느 시기에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화에 임하는 모습에서, 심지어 이산가족의 상호방문과 같은 人道主義的 교류조차 받아 들이지 않는 모습에서 몹시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독의 교훈은 지금 당장의 성급한 통일을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남북한이 접촉, 교류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나 접촉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는 말과 같이 통일의 그날을 향하여 꾸준히 인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우리는 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서독의 통일 실현을 가져 온 原動力이 바로 동독의 「自由化」·「民主化」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分斷國 統合過程 (통일총서/11)

1991年 1月 5日 印刷

1991年 1月 10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院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 2 동 산73-13

電話：901-7120~4

(통연 91-1-5)